

생활복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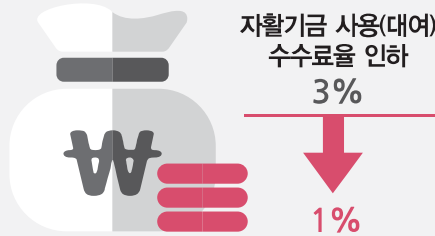
072

자활기금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(이자율 인하)

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활기금 사용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
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

사업 개요

- 자활기금 조례 개정



추진 사업

- 기금조례(안)입법예고 : 2014. 10. 2 ~ 2014. 10. 22
- 조례규칙 심의회 : 2014. 11월 예정
- 구의회 상정 : 2014. 11월 ~ 12월

기대 효과

-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및 자활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
-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기여

소요 예산

없음

